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0. 1. 13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0. 1. 1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1.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가.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 시범 실시 시·구에 한하여 전담인력을 승인해줌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만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증원 총인원 : 7명(단,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정원임)

• 직급별

계	행정 6급	행정 7급	행정 8급
7	1	4	2

- 7명 증원시 연도별 정원

1999년		2000년		2001년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2,008명	2,015명	1,939명	1,946명	1,867명	1,874명

- ▶ 감축 : 1999년 69명, 2000년 69명, 2001년 72명

- 부칙 중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 2000년 정원 : 2001. 7. 31 → 2001. 6. 30
 - 2001년 정원 : 2002. 7. 31 → 2002. 6. 30
- 부칙 중 복식부기요원 7명 한시정원 명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복식부기 시범실시 기간은 얼마인가	○ 2년 정도 소요되며,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한시 정원임.
○ 복식부기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의결년월일	2000. 1. 21 (제76회)

제출년월일 : 2000. 1. 1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복식부기 시범실시 시·구에 한하여 전담인력을 승인해줌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만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증원 총인원 : 7명(단,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 정원임)

• 직급별

계	행정 6급	행정 7급	행정 8급
7	1	4	2

○ 7명 증원시 연도별 정원

1999년		2000년		2001년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기 존	변 경
2,008명	2,015명	1,939명	1,946명	1,867명	1,874명

▶ 감축 : 1999년 69명, 2000년 69명, 2001년 72명

○ 부칙 중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 2000년 정원 : 2001. 7. 31 ⇒ 2001. 6. 30

• 2001년 정원 : 2002. 7. 31 ⇒ 2002. 6. 30

○ 부칙 중 복식부기요원 7명 한시정원 명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867명”을 “1,874명”으로 하고 제1호 “1,843명”을 “1,850명”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0년 6월 30일”로 하고, “2001년 7월 31일”을 “2001년 6월 30일”로 하며, 「표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표 중 정원란 정원의 총수 “2,008명”을 “2,01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984명”을 “1,991명”으로 하며 「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정원란 정원의 총수 “1,939명”을 “1,94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951명”을 “1,922명”으로 한다.

부칙 제3조 중 “매년 7월 31일”을 “매년 6월 30일”로 하고,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복식부기 7명은 한시정원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생략)</p> <p>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867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843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p> <p>제3조(생략)</p>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874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850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p> <p>제3조(현행과 같음)</p>																
부 칙	부 칙																
<p>제1조(생략)</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2000년 12월 3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u></p>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u>2000년 6월 30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6월 30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u></p>																
<p>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data-bbox="156 948 891 1240">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u>2,008명</u></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u>1,984명</u></td> </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u>24명</u></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2,008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1,984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24명</u>	<p>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p> <table border="1" data-bbox="982 948 1705 1240"> <thead> <tr> <th>구 분</th> <th>정 원</th> </tr> </thead> <tbody> <tr> <td>정원의 총수</td> <td><u>2,015명</u></td> </tr> <tr> <td>1. 집행기관의 정원</td> <td><u>1,991명</u></td> </tr> <tr> <td>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td> <td><u>24명</u></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2,015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1,991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24명</u>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2,008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1,984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24명</u>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u>2,015명</u>																
1. 집행기관의 정원	<u>1,991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24명</u>																

현 행

개 정 안

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93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9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94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92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

②제1항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1」,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②제1항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집행기관의 정원 69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집행기관의 정원 7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1」,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②복식부기요원 7명은 한시정원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둔다.